

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페놀(PHENOL)

Date of issue: 2012-08-08 Revision date: 2015-05-06 Version: R0004.0002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 제품명

- 페놀(PHENOL) [MSDS-005]

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용도 : BPA원료, 아닐린, 페놀수지, 가소제, 향료, 염료

-사용상의 제한 : 탈 수 있으나 쉽게 발화하지는 않음. 화재의 열에 폭발할 수 있음

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○ 제조자 정보

- 회사명 : 금호피앤비화학주식회사 - 주소 :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 2로 218

- 담당부서 : 환경안전팀

- 전화번호 : 061-688-3682,061-688-3684

- 긴급 전화번호 : 061-688-3507 - FAX 번호 : 061-688-3686

- 이메일 주소 :

○ 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회사명 : 금호피앤비화학주식회사

- 주소 : 서울 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, 시그니쳐타워 동관 8층

- 담당부서 : Phenol

- 전화번호 : 02-6961-3465,3482 - 긴급 전화번호 : 02-6961-1114 - FAX 번호 : 02-6961-3490,3492

- 이메일 주소 : phenol_domestic@kpb.co.kr

2. 유해성·위험성

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
- 급성 독성(경구) : 구분4 - 급성 독성(경피) : 구분3

- 급성 독성(흡입: 분진/미스트) : 구분2

-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: 구분1

-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: 구분1

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구분1B

- 생식독성 : 구분1B

- 특정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: 구분1 - 특정표적장기 독성(반복 노출): 구분1

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○ 그림문자







○ 신호어

--위험

○ 유해·위험 문구

- H302 삼키면 유해함
- H311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
- H314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
-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
- H330 흡입하면 치명적임
- H340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
- H360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
- H370 신체 중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(11항 참조(MSDS)).
-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(11항 참조(MSDS)).

○ 예방조치문구

1) 예방

-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.
-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
- P260 (분진·흄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)를(을) 흡입하지 마시오.
-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.
-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,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.
-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.
- P280 (보호장갑·보호의·보안경·안면보호구)를(을) 착용하시오.
- P281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.
- P284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.

2) 대응

- P301+P312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01+P330+P331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.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.
- P302+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.
- P303+P361+P353 피부(또는 머리카락)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.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/샤워하시오.
- P304+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.
- P305+P351+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. 계속 씻으시오.
- P307+P311 노출되면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08+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
- P310 즉시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
- P320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하시오.
- P321 필요한 처치를 하시오.
- P322 필요한 조치를 하시오.
- P330 입을 씻어내시오.
- P361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.
- P363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.

3) 저장

- P403+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.
-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.

4) 폐기

- P501 (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)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.

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

○ NFPA 등급 (0~4 단계)

- 보건 : 4 , 화재 : 2, 반응성 : 0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(異名)	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	함유량(%)
Phenol ; Hydroxybenzene	-	108-95-2 / KE-28209	100

4. 응급조치 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

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.
-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우선 렌즈를 제거하시오.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-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.
- 오염된 피복은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탁하시오.
- 오염된 피복과 신발을 제거하고 격리시키시오.
-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.
- 피부 확산을 방지하시오.
- 환자를 씻길 경우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피복의 접촉을 피하시오.

다. 흡입했을 때

-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.
-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증상(발적, 자극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.
-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멈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시오.

라. 먹었을 때

-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.
-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
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-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- 노출 및 노출 우려시 의학적인 조치, 조언을 구하시오.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

- 드라이케미칼, 이산화탄소
- 직사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.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
-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
-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: 실내, 실외, 하수구에 폭발 위험
-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
-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
- 독성: 흡입, 섭취,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
-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

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시오.
- 소방서에 알리고, 화재 위치와 유해한 특징을 알려주시오.
- 대규모 화재인 경우 무인방수장치를 활용하며, 여의치 않을 경우 물러나서 타도록 내버려 두시오.
-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.
- 탱크가 화염에 휩싸였을 경우에는 접근하지 마시오.

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

-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구(『8.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』항 참조)를 착용하여, 눈 피부에의 접촉과 흡입을 피할 것.

- 밀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전에 환기를 실시하시오.
-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마시오. 작업자가 위험 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키시오.
- 보호구를 착용한 후 손상된 용기 또는 누출된 물질을 처리하시오.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.
- 전문가의 감독없이 청소 및 처리를 하지 마시오.
- 피부 접촉 및 흡입을 피하시오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.
-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·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하시오.

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
- 다랑누출 :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.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.
-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.
- 폐기물관리법(환경부)에 의해 처리하시오.
-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.
- 작은 고체상 유출 :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.
- 적당한 용기에 쓸어 담고 오염된 표면을 청소하시오.
- 누출된 물질은 잠재 위험성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수거하시오.

7. 취급 및 저장 방법

가. 안전취급요령

-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.
-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피하시오.
-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하시오.
-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.

나. 안전한 저장 방법

- 손상된 용기는 사용하지 마시오.
-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하시오.
-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.
- 직사광선을 피하시오.
- 원래의 용기에만 보관하시오.
- 밀폐용기에 담아 수거하시오.
- 취급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.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- 국내노출기준
 - [Phenol ; Hydroxybenzene] : TWA : 5 ppm 19 mg/m³ 폐놀
- ACGIH노출기준
 - [Phenol ; Hydroxybenzene] : TWA 5 ppm (19 mg/m3)
- 생물학적 노출기준
 - 해당없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사업주는 가스, 증기, 미스트, 홈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.

다. 개인 보호구

○ 호흡기 보호

-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.
-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.
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.
- 분진, 미스트, 흄용 호흡보호구

-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(고효율 미립자 여과재)
-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(분진, 미스트, 흄용 여과재)
- 고효율 미립자 필터가 부착된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
-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: 송기마스크(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), 공기호흡기(전면형)

○ 눈 보호

-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 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하시오.
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시오.

் 수 부 호

- 적합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.

○ 신체 보호

- 적합한 보호의를 착용하시오.

9. 물리화학적 특성

기 시기	T
가. 외관	
- 성상	고체(기타)
- 색	자료없음
나. 냄새	특이적인 냄새
다. 냄새역치	3 ppm
라. pH	6(수용액)
마. 녹는점/어는점	43°C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	182 °C
사. 인화점	79 °C
아. 증발 속도	자료없음
자. 인화성 (고체, 기체)	자료없음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	10 / 1.36 %
카. 증기압	0.35mmHg(25 ℃)
타. 용해도	8.28g/100ml(25 ℃)
파. 증기밀도	$3.24(\frac{37}{6}7) = 1)$
하. 비중	1.0576
거. N-옥탄올/물 분배계수	1.46
너. 자연발화온도	715 °C
더. 분해온도	자료없음
러. 점도	1.51 cP (80 ℃)
머. 분자량	94.11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

-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.
- 유해중합반응을 일으키지 않음.

나. 피해야 할 조건

- 혼합금지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시오.

다. 피해야 할 물질

- 자료없음

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- 자료없음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(호흡기)
 - 자료없음
- (경구)

- 삼키면 유해함

○ (눈·피부)

-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
-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

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○ 급성 독성

* 경구 독성

- [Phenol; Hydroxybenzene]: rat(LD50) = 317mg/kg

* 경피 독성

- [Phenol; Hydroxybenzene]: rabbit LD50 = 670mg/kg,

* 흡입 독성

- [Phenol ; Hydroxybenzene] : Rat LC50 = 0.316 mg/L

○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

- [Phenol ; Hydroxybenzene] : 토끼를 이용한 피부 자극성 시험 데이터 및 인체의 건강 영향의 데이터에서 피부 부식성이 있음을 밝힘

○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

- 토끼에서 안 자극성 시험결과 각막의 완전한 혼탁이 나타남

○ 호흡기 과민성

- 자료없음

○ 피부 과민성

- 기니피그를 이용한 시험결과 음성, 마우스를 이용한 시험 결과 음성

○ 발암성

* 산업안전보건법

- 자료없음

*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

- 자료없음

* IARC

- [Phenol; Hydroxybenzene]: Group 3

* OSHA

- 자료없음

* ACGIH

- [Phenol ; Hydroxybenzene] : A4

* NTP

- 자료없음

* EU CLP

- 자료없음

○ 생식세포 변이원성

- [Phenol ; Hydroxybenzene] :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유독물 고시에 따라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2로 분류됨

○ 생식독성

- 부모동물에 일반 독성 영향이 없는 용량에서 산아수 감소가 나타남

○ 특정 표적장기 독성 (1회 노출)

- 사람에서 심장, 혈관에 대한 영향을 일으킴. 호흡수과다. 호흡곤란, 심장율동부정, 심혈관성쇼크, 중증의 대사성 산성화, 부정맥 등

○ 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

- 사람에서 심혈관계 질환에서 기인하는 사망률증가, 구토, 설사, 복통,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영향, 간장장해를 일으킴

○ 흡인 유해성

- 자료없음

○ 고용노동부고시

* 발암성

- 자료없음

* 생식세포 변이원성

- [Phenol ; Hydroxybenzene] : 생식세포변이원성 2

* 생식독성

- 자료없음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생태독성

○ 어류

- LC50 10.9mg/l 96 hr

- 감각류
 - LC50 3.1mg/l 48hr
- 조류
 - EC50 370mg/l 96 hr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- 잔류성
 - log Kow 1.46
- 분해성
 - 자료없음

다. 생물 농축성

- 생물 농축성
 - 자료없음
- 생분해성
 - 85%

라. 토양 이동성

- 자료없음

마. 기타 유해 영향

- 자료없음

13. 폐기 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

- 2종류이상의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량화 안정화 처리할 수 있음.
-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.
- 소각 처리할 것.

나. 폐기시 주의사항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.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.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유엔번호 (UN No.)

- 1671

나. 유엔 적정 선적명

- Phenol, solid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

- 6.1

라. 용기등급

- Ⅱ

마. 해양오염물질

- 자료없음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

-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.
-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.
-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F-A (General fire schedule)
-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S-A (Toxic substances)

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- 작업환경측정물질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Phenol ; Hydroxybenzene)
- 노출기준설정물질
 - 해당됨 (Phenol; Hydroxybenzene)
- 관리대상유해물질
 - 해당됨 (0.3% 이상 함유한 Phenol; Hydroxybenzene 페놀(특별관리물질))
-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Phenol; Hydroxybenzene)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유독물질
 - 해당됨 (5% 이상 함유한 Phenol; Hydroxybenzene)
-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
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Phenol; Hydroxybenzene)
- 사고대비물질
 - 해당됨 (5% 이상 함유한 Phenol; Hydroxybenzene)
- 취급제한물질
 - 해당없음
- 허가물질
 - 해당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해당없음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[별표1]에 의해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됨.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-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
 - 해당없음
- EU 분류 정보
 - * 확정분류 결과
 - $\hbox{-} \ [Phenol\ ;\ Hydroxybenzene]: Muta. Cat. 3;\ R68\ T;\ R23/24/25\ Xn;\ R48/20/21/22\ C;\ R34$
 - * 위험 문구
 - [Phenol; Hydroxybenzene]: R23/24/25, R34, R48/20/21/22, R68
 - * 예방조치 문구
 - $\hbox{-} \ [Phenol\ ; Hydroxybenzene]: S1/2, S24/25, S26, S28, S36/37/39, S45$
- 미국 관리 정보
 - * OSHA 규정 (29CFR1910.119)
 - 해당없음
 - *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
 - [Phenol ; Hydroxybenzene] : $453.599~\mathrm{kg}$ 1000 lb
 - *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
 - [Phenol ; Hydroxybenzene] : 226.7995/4535.99 kg 500/10000 lb
 - *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
 - [Phenol ; Hydroxybenzene] : 453.599 kg 1000 lb
 - *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
 - [Phenol ; Hydroxybenzene] : 해당됨
- 로테르담 협약 물질
 - 해당없음
- 스톡홀름 협약 물질
 - 해당없음
-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
 - 해당없음

16.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-37호(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.
- 본 MSDS는 KOSHA, NITE, ESIS, NLM, SIDS, IPCS,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.

나. 최초 작성일자

- 2012-08-08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
- 3 회, 2015-05-06

라.기타

-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, 환경, 안전을 보호하고자,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.